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직군’을 직급표상 첫 번째로 배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술직렬”이란”을 ““과학기술직렬”이란”으로,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제1호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를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제38조제8항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과학기술	공업	일반기계	지방 관리 관	지방 이사 관	지방부 이사관	지방과 학기술 서기관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지방공업 사무관	지방공업 주사	지방공업 주사보	지방공업 서기	지방공업 서기보
		원자력									
		금속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농업	일반농업					지방농업 사무관	지방농업 주사	지방농업 주사보	지방농업 서기	지방농업 서기보
		식물검역									
		축산									
		생명유전									
	녹지	산림자원					지방녹지 사무관	지방녹지 주사	지방녹지 주사보	지방녹지 서기	지방녹지 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	수의					지방수의 사무관	지방수의 주사	지방수의 주사보		
	해양 수산	일반해양									
		일반수산									
		어로									
		일반선박					지방해양 수산사무 관	지방해양 수산주사	지방해양 수산주사 보	지방해양 수산서기	지방해양 수산서기 보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 시설									
보건	보건					지방보건 사무관	지방보건 주사	지방보건 주사보	지방보건 서기	지방보건 서기보
	방역									
식품 위생	식품위생					지방식품 위생사무 관	지방식품 위생주사	지방식품 위생주사 보	지방식품 위생서기	지방식품 위생서기 보
의료 기술	의료기술					지방의료 기술사무 관	지방의료 기술주사	지방의료 기술주사 보	지방의료 기술서기	지방의료 기술서기 보
의무	일반의무					지방의무 사무관				
	치무									
약무	약무					지방약무 사무관	지방약무 주사	지방약무 주사보		
간호	간호					지방간호 사무관	지방간호 주사	지방간호 주사보	지방간호 서기	
간호 조무	간호조무					지방간호 조무사무 관	지방간호 조무주사	지방간호 조무주사 보	지방간호 조무서기	지방간호 조무서기 보
보건 진료	보건진료	지방 관리 관	지방 이사 관	지방부 이사관	지방기 술서기 관	지방보건 진료사무 관	지방보건 진료주사	지방보건 진료주사 보	지방보건 진료서기	
환경	일반환경									
	수 질					지방환경 사무관	지방환경 주사	지방환경 주사보	지방환경 서기	지방환경 서기보
	대 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지방항공 사무관	지방항공 주사	지방항공 주사보	지방항공 서기	지방항공 서기보
	조종									
	정비									
시설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지방시설 사무관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서기	지방시설 서기보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계									
		디자인									
	방재 안전	방재안전					지방방재 안전사무 관	지방방재 안전주사 관	지방방재 안전주사 보	지방방재 안전서기	지방방재 안전서기 보
	방송 통신	통신사					지방방송 통신사무 관	지방방송 통신주사 관	지방방송 통신주사 보	지방방송 통신서기	지방방송 통신서기 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위생	위생					지방위생 사무관	지방위생 주사	지방위생 주사보	지방위생 서기	지방위생 서기보
		사역									
	조리	조리					지방조리 사무관	지방조리 주사	지방조리 주사보	지방조리 서기	지방조리 서기보
	시설 관리	시설관리					지방시설 관리사무 관	지방시설 관리주사	지방시설 관리주사 보	지방시설 관리서기	지방시설 관리서기 보
	운전	운전					지방운전 사무관	지방운전 주사	지방운전 주사보	지방운전 서기	지방운전 서기보
2. 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 관리 관	지방 이사 관	지방부 이사관	지방서 기관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 주사	지방세무 주사보	지방세무 서기	지방세무 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전산 주사	지방전산 주사보	지방전산 서기	지방전산 서기보
		데이터									
	교육 행정	교육 행정					지방교육 행정사무 관	지방교육 행정주사	지방교육 행정주사 보	지방교육 행정서기	지방교육 행정서기 보
	사회 복지	사회복지					지방사회 복지사무 관	지방사회 복지주사	지방사회 복지주사 보	지방사회 복지서기	지방사회 복지서기 보
	사서	사서					지방사서 사무관	지방사서 주사	지방사서 주사보	지방사서 서기	지방사서 서기보
	속기	속기					지방속기 사무관	지방속기 주사	지방속기 주사보	지방속기 서기	지방속기 서기보
3. 관리 운영	방호	방호					지방방호 사무관	지방방호 주사	지방방호 주사보	지방방호 서기	지방방호 서기보
	토목 운영	토목운영						지방토목 운영주사	지방토목 운영주사 보	지방토목 운영서기	지방토목 운영서기 보
	건축 운영	건축운영						지방건축 운영주사	지방건축 운영주사 보	지방건축 운영서기	지방건축 운영서기 보
		배관운영									
	통신 운영	통신운영						지방통신 운영주사	지방통신 운영주사 보	지방통신 운영서기	지방통신 운영서기 보
	전화 상담 운영	전화상담 운영						지방전화 상담운영 주사	지방전화 상담운영 주사보	지방전화 상담운영 서기	지방전화 상담운영 서기보
	전기 운영	전기운영						지방전기 운영주사	지방전기 운영주사 보	지방전기 운영서기	지방전기 운영서기 보
	기계 운영	기계운영						지방기계 운영주사	지방기계 운영주사 보	지방기계 운영서기	지방기계 운영서기 보
		영사운영									
	열관 리운 영	열관리운 영						지방열관 리운영주 사	지방열관 리운영주 사보	지방열관 리운영서 기	지방열관 리운영서 기보

화공 운영	화공 운영						지방화공 운영주사	지방화공 운영주사 보	지방화공 운영서기	지방화공 운영서기 보
가스 운영	가스 운영						지방가스 운영주사	지방가스 운영주사 보	지방가스 운영서기	지방가스 운영서기 보
기후 환경 운영	기후 환경 운영						지방기후 환경운영 주사	지방기후 환경운영 주사보	지방기후 환경운영 서기	지방기후 환경운영 서기보
선박 항해 운영	선박항해 운영						지방선박 항해운영 주사	지방선박 항해운영 주사보	지방선박 항해운영 서기	지방선박 항해운영 서기보
선박 기관 운영	선박기관 운영						지방선박 기관운영 주사	지방선박 기관운영 주사보	지방선박 기관운영 서기	지방선박 기관운영 서기보
농림 운영	영림운영						지방농림 운영주사	지방농림 운영주사 보	지방농림 운영서기	지방농림 운영서기 보
	원예운영									
사육 운영	사육 운영						지방사육 운영주사	지방사육 운영주사 보	지방사육 운영서기	지방사육 운영서기 보
보건 운영	보건 운영						지방보건 운영주사	지방보건 운영주사 보	지방보건 운영서기	지방보건 운영서기 보
사무 운영	워드운영						지방사무 운영주사	지방사무 운영주사 보	지방사무 운영서기	지방사무 운영서기 보
	필기운영									
	회계처리 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1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기술직군 및 지방기술서기관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과학기술직군 및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기술직군 및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직군 및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직군과 지방기술서기관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 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연구직렬”이란 「지방 연구 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 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 며, “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 표 1의 <u>기술직군</u> 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 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4. ----- ----- ----- ----- -- “과학기술직렬”이란 ---- ---- <u>과학기술직군</u> ----- -----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법 제30 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 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 ----- ----- -----.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 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u>기술직</u> <u>렬</u>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1. ----- ----- ----- ----- <u>과학기</u> <u>술직렬</u>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u>기술직렬</u>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 ----- <u>과학기술직렬</u>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u>기술직렬</u> 6급 이하 공무원의 시·도나 시·군·자치구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나 도의회의 의장이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임용권	④ ----- <u>과학기술직렬</u> ----- ----- ----- ----- ----- ----- ----- ----- -----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
진시험) ① -----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
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에는 시·도지사-----

-----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
성하는 경우에는 그 -----

[illegible]

②

과

학기술직렬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 ⑦ (생략) ⑧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u>기술직렬</u>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⑨ (생략)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u>과</u> <u>학기술직렬</u> ----- ----- ----- -----. ⑨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4